

2023년도 제주다양성영화 후반작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

제주특별자치도와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「2023년도 제주다양성영화 후반작업 지원사업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3. 02. 06.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장

1. 사업목적

- 제주다양성영화 후반작업 지원을 통하여 지역기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, 제주영화의 우수성을 제고하여 영상문화 도시로의 발전토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함

2. 사업개요

- 협약기간 : 협약체결일(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) ~ 2023.12.15.
- 사업내용 : 제작(production)이 완료된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제주다양성영화(독립영화, 예술영화, 다큐멘터리영화 등) 대상 후반작업(Post-production) 비용 지원
- 지원규모 : 4편 내외, 총 지원금 37,500천원

| 구분 | 편당 지원금액 | 비고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장편지원 | 최대 2천만 원 이내 차등지급 | 상영시간 60분 이상 장편영화 |
| 단편지원 | 최대 5백만 원 이내 차등지급 | 상영시간 60분 미만 단편영화 |

※ 각 부문에 해당작이 없거나 잔여예산 발생 시 예산 전액 또는 일부 통합하여 지원 가능하며, 선정편수 및 금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- 지원대상 : 당해 사업연도 이전 주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콘텐츠제작 사업자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개인창작자(감독, 메인 프로듀서, 메인 작가에 한함)

※ 도내 지역 또는 학교 출신자, 명예도민증 또는 재외도민증 소지자 포함

※ 1인(사) 당 1개 작품만 접수가능(2개 이상 작품 신청 시 신청작품 전체 제외)

○ 사업비 사용 용도 : 후반제작(편집, 녹음, DI, 음향, 자막 등) 작업비

| 구분 | 사용 용도 |
|-----|---|
| 인건비 | • 후반작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력의 직접 인건비 ※ 신청자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집행 불가(법인사업자 대표 집행 가능) |
| 임차비 | • 장소 임차료(세트장, 녹음실 등), 장비 대여료 등 |
| 진행비 | • 식대(부식비 포함), 교통비 등 후반작업 진행비 일체 |

※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20% 이상 70% 이하 범위에서 집행

※ 식대(부식비 포함)는 총 사업비의 30% 이하 범위에서 집행

※ 자산취득비(촬영장비 구입 등), 경상비(통신비, 임대료 등 운영경비) 등은 집행 불가

3. 지원조건 및 참여제한

○ 지원조건

- 보조금(지원 결정 금액)의 10% 이상 자부담 의무매칭
- 제작완성보증을 위하여 교부신청 전까지 보조금의 100%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(보증보험 수수료는 개인부담)
- 협약종료일('23.12.15.)까지 정산을 완료하고, 사업종료일('23.12.29.)까지 제작 완성본 제출
 - ※ 완성본 제출기한은 진흥원과 사전 협의한 경우 1회(최대 6개월 이내)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며, 이 경우 별도의 신청서와 함께 해당 기간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갱신하여 추가 제출하여야 함. 단,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하지 않음
- 완성본 제출 후 1년 이내에 국내·외 영상, 영화제 출품 등 결과물 활용내역 제출
- 홍보자료 및 상영(방영)본의 오프닝 또는 엔딩크레딧에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작인 사실 표기

| | |
|--|--|
| 소정 양식 |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<small>JEJU CONTENTS AGENCY</small> |
|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제주다양성영화 후반작업 지원작 | |

- 진흥원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성과물 및 수행기업 정보를 연구 및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, 사업종료 이후에도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

○ 신청 및 심사 제외 대상

-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신청한 경우
-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(산하 유관기관 포함)로부터 중복하여 후반작업 지원을 받은 경우
 - ※ 중복지원 불가. 단,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의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품은 신청 가능
- 신청일 기준 「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공모사업」에 선정된 후 완성본을 제출하지 않은 제작사(대표자), 연출자, 개인인 경우
 - ※ 신청일 이전까지 과제수행을 완료한 후 신청 가능
- 진흥원 지원사업의 정산·환수금 등이 미완료·미납 중인 경우
- 진흥원의 관련 규정 또는 협약 및 계약 등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제작사(대표자), 연출자, 개인인 경우
-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「영화인 신문고」 기준 영화 스텝 등에 임금체불로 인하여 분쟁 혹은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(대표자), 연출자, 개인인 경우
-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92조(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)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
- 기타 심사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, 의결한 작품
 - ※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접수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4. 보조금 교부·집행·정산

○ 보조금 교부 절차 및 방법

- 보조사업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흥원과의 협약체결을 완료해야 함
- 보조금은 협약체결 후 별도 신청에 의해 교부. 단, 보조금 교부 후 환수 사유 발생 시에는 원금 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
-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시 제반서류 및 필요한 진행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진흥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

○ 보조금 집행

- 보조사업자는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(보조금 + 자부담금)를 관리하여야 하며, 진흥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·정산하여야 함
※ 사업비는 체크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집행(현금인출 집행 방식 제외)
- 사업비 집행기간은 협약서 상의 수행기간(협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12월 15일까지)으로 하며, 지출항목 및 금액 등 당초 제시했던 사업 계획에 따른 집행을 원칙으로 함
- 진흥원은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의뢰할 수 있음.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성실히 응해야 함

○ 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

- 보조사업자는 협약종료일 이전까지 진흥원이 요구하는 양식의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- 정산범위 : 진흥원 보조금 + 자부담금(보조금의 10% 이상)
- 제출서류 : 결과보고 제출공문 및 결과보고서, 사업비 관리 통장 거래내역 사본, 집행 증빙자료, 완성본 등

5. 지원절차



6.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

○ 진행일정

- 공고기간 : 2023.02.06.(월) ~ 02.28.(화)
- 접수기간 : 2023.02.20.(월) ~ 02.28.(화) 17:00까지, 9일간

○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(flyjfly@ofjeju.kr)

- 제출서류 및 양식은 진흥원 홈페이지(<http://ofjeju.kr>) 참조
- 실적증명 자료 중 파일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방문접수 가능(제주시

신산로82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2층 영상산업팀)

- **제출서류** : [별첨 1. 지원사업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] 확인 후 작성
 - 지원신청서(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필수) 및 사업계획서 각 1부
 - 신청작품의 편집영상 1편 (가편집본 전체영상 제출)
 - 후반작업비 예산계획서 1부
 - 기타 서류 각 1부 (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지원사업 체크리스트, (예비)심사위원 추천표 등)
- **접수 및 문의** :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영상산업팀

| 사업명 | 담당자 | 연락처 | 메일주소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제주다양성영화 후반작업 지원사업 | 장수환 선임 | 064-735-0623 | flyjfly@ofjeju.kr |

7. 선정방법 및 기준

- **심사일정** : 2023년 3월 중 (※ 진흥원 내·외부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)
- **심사방법**
 - 1차 : 제출서류 검토(미비서류 발생 시 지원 취소될 수 있음)
 - 2차 : 전문가 5인 이내 구성된 심사위원 (면접)심사 및 질의응답
- **심사기준**

| 심사기준 | 심사항목 | 배점 |
|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|
| 작품성 및 기획력 | - 작품 컨셉 및 스토리 경쟁력 - 연출 역량 및 의지 | 25점 |
| 기술적 완성도 | - 기술역량 및 인력구성의 적절성 - 참여인력의 작품활동 실적 | 25점 |
| 제작방식 및 예산집행의 합리성 | - 일정 및 예산 등 세부계획의 타당성 - 예산집행 계획의 현실성 및 투명성 | 25점 |
| 결과물 활용계획 | - 결과물에 대한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| 25점 |
| 합 계 | | 100점 |
| 우대가점 | -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사업 지원작품(3점) - 진흥원 내 입주기업(2점) | 5점 |

- ※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선정된 작품에 한하여 신청예산 한도 내 지원액 산정
- ※ 모든 가점사항은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대 5점까지 인정되며, 해당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
- ※ 협약 포기, 해지 등을 고려하여 예비 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

8. 기타사항

○ 결과물 귀속

- 지식재산권의 소유는 작가 및 제작사에게 귀속함. 단, 아래의 활용 권한을 진흥원에 인정함
 - 작품의 전체 혹은 일부를 공익 목적에 한하여 온·오프라인 무료 사용(단, 사용 전 상호 협의 후 진행)
 - 진흥원 시설 운영(스튜디오, 영화관, 전시실 등), 제주특별자치도 및 진흥원에서 주최(관)하는 행사 및 홍보 등에 활용
 - 기타 지원 취지에 따른 홍보마케팅, 영상물·책자 발간 등 진흥원 사업과 관련한 활용 등
 - 시사회 개최 등 진흥원이 요청하는 관련 사업에 적극 협력
 -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스틸컷의 비상업적 활용 동의(보도자료 등)

○ 유의사항

- 본 사업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, 진흥원에서 정하는 관련 규정 및 규칙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이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
- 본 사업의 신청,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, 보조사업자의 책임으로 봄
- 다음의 경우 보조금 환수(이자 포함),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 - 협약기한 내 제작을 중단·포기하거나 사업종료일까지 완성작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
 -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 - 사업비를 영화 후반작업 비용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 -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,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

의한 진흥원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
-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등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
-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상실 또는 지원작품(작가 포함)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거나 저작권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
- 기타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 및 규칙에서 정한 협약체결 중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
- 위 사유 등으로 계속해서 협약유지가 어려울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지원사업 제재조치 및 이행보증보험에 의거 강제 환수조치

※ 과제가 중단된 경우, 향후 2년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참여제한

※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, 보조사업자의 책임으로 봄

※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수정공고 추진